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안 제4조)

라.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안 제5조)

마. 지도·감독(안 제6조)

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안건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시행. ’24.3.5.)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을 안내한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제4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는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함을 규정함.
- 안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의 수행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의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시행. ’24.3.5.)이 일부 개정되어 제7조제2의2호(공공기관의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구(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은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총 두 곳이고, 영등포구의 공단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440 호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24.3.5.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다.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안 제4조)

라.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안 제5조)

마. 지도·감독(안 제6조)

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10. 10.~ 10. 3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제4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4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4. 사고대응
5. 자체 진단·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